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67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용우 · 박용갑 · 윤준병
윤종균 · 이수진 · 김한규
진성준 · 정태호 · 오세희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2) 중 “자녀의”를 “자녀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의”로, “1명당”을 “또는 아동 1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 -----
가. ~ 러. (생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며.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u>자녀의</u>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u>1명당 월 20만원</u>	2) ----- ----- ----- ----- ----- ----- ----- ----- ----- ----- <u>-----자녀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u>

이내의 금액	<u>타된 같은 연령의 아동</u> <u>의</u> ----- ----- ----- <u>또는</u> <u>아동 1명당</u> ----- -----
버. ~ 처. (생 략) 4. · 5. (생 략)	버. ~ 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